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95호 2021. 6. 28.(월)

규 칙

- 남해군 규칙 제119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남해군 규칙 제119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고 시

- 남해군 고시 제2021-93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11
- 남해군 고시 제2021-95호 남해군계획시설(공공청사:남해군청)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3

공 고

- 남해군 공고 제2021-893호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8
- 남해군 공고 제2021-906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2
- 남해군 공고 제2021-925호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4
- 남해군 공고 제2021-926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2
- 남해군 공고 제2021-928호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70
- 남해군 공고 제2021-929호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궤도)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76
- 남해군 공고 제2021-933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2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9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6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생활관광국: 주민생활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년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경제안전건설국: 경제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활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도시건축과장 및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기획성과담당관: 기획성과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행정지원담당관: 행정지원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공공건축추진단: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6. 환경물관리단: 환경물관리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하부조직) 남해군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2. 건강증진과장: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각 호 외에 부분 중 ‘농업기술과를 둔다’ 를 ‘농업기술과, 산림공원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3호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규칙 제1185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19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6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규칙 제118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해 군 공 보

(6) 제 695 호

2021년 6월 28일

[별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보건소	농업기 술훈터		
총계	합 계		673	354(2)	13	74	68	20	144
	정무직		1	1					
	일반직		643	351(2)	13	74	41	20	144
	별정직		1	1					
	연구직		1	1					
지도직		27				27			
장무직계	군수	정무직	1	1					
일반직계			643	351(2)	13	74	41	20	144
일반직	4급 합계		4	3		1			
일반직	4급	서기관	1	1					
일반직	4급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일반직	4급	기술서기관	1			1			
일반직	4급5급 합계		1	1					
일반직	4~5급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일반직	5급 합 계		34	14	3	2	5	1	9
일반직	5급	행정	4	3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	1	1					
일반직	5급	행정·해양수산	2	1					1
일반직	5급	행정·시설	6	6					
일반직	5급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1	2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해양수산·보건	1		1				
일반직	5급	행정·시설·해양수산·보건	1						1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지·시설	2						2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일반직	5급	행정·환경·시설	1	1					
일반직	5급	농업·농촌지도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농촌지도	2				2		
일반직	5급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일반직	5급	행정·농업·농지·농촌지도	1				1		
일반직	5급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일반직	5급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1			1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보건소	농업기 술훈터		
일반직	6급 합계		165	90	4	12	17	5	37
일반직	6급	행정	22	18	3			1	
일반직	6급	세무	1	1					
일반직	6급	해양수산	4	4					
일반직	6급	보건진료	3			3			
일반직	6급	시설	5	5					
일반직	6급	행정·전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	4	4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	7	7					
일반직	6급	행정·사서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전산	7						7
일반직	6급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	11	2					9
일반직	6급	행정·농업·공업	2	2					
일반직	6급	행정·농업·공업·녹지	2	2					
일반직	6급	행정·녹지	1						1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	4	4					
일반직	6급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일반직	6급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일반직	6급	행정·보건·환경·농업	1	1					
일반직	6급	행정·보건·환경·공업	1	1					
일반직	6급	행정·시설	22	21					1
일반직	6급	보건·간호·의료기술	6			6			
일반직	6급	행정·농업·수의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	1				1		
일반직	6급	농업·녹지	1				1		
일반직	6급	농업·농촌지도	4				4		
일반직	6급	행정·세무·농업	3					1	2
일반직	6급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세무·시설·해양수산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보건	6	2					4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일반직	6급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녹지	4				4		
일반직	6급	행정·환경	4	4					
일반직	6급	행정·농업·시설	9	4					5
일반직	6급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농촌지도	5				5		
일반직	6급	농업·공업·농촌지도	1				1		
일반직	6급	행정·녹지·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환경·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농업·해양수산	2						2
일반직	6급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6급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1					1	
일반직	6급	운전	2	1	1				

남 해 군 공 보

(8) 제 695 호

2021년 6월 28일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보건소	농업기 술훈터		
일반직	6급	통신운영	1	1					
일반직	6급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7급 합계		196	106	2	35	8	8	37
일반직	7급	행정	32	22	2			2	6
일반직	7급	세무	6	2				1	3
일반직	7급	사회복지	11	4				1	6
일반직	7급	전산	1	1					
일반직	7급	공업	5	4					1
일반직	7급	해양수산	7	7					
일반직	7급	보건	12			12			
일반직	7급	의료기술	3			3			
일반직	7급	간호	7			7			
일반직	7급	보건진료	9			9			
일반직	7급	환경	1	1					
일반직	7급	시설	9	8				1	
일반직	7급	행정·세무·전산	2	2					
일반직	7급	행정·세무·농업	4	1					3
일반직	7급	행정·전산·농업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	18	8				2	8
일반직	7급	행정·농업	9	1			3		5
일반직	7급	행정·농업·녹지	7	2			3		2
일반직	7급	행정·농업·수의	1				1		
일반직	7급	행정·보건·의료기술	2			2			
일반직	7급	행정·환경	3	3					
일반직	7급	행정·시설	22	22					
일반직	7급	세무·전산	1	1					
일반직	7급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일반직	7급	농업·시설	2	1					1
일반직	7급	보건·간호	1			1			
일반직	7급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일반직	7급	보건·환경	1	1					
일반직	7급	행정·환경·시설	1	1					
일반직	7급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일반직	7급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일반직	7급	행정·녹지·시설	1	1					
일반직	7급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1	1
일반직	7급	운전	6	6					
일반직	7급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일반직	7급	녹지	1	1					
일반직	8급 합계		173	99	3	21	6	4	40
일반직	8급	행정	31	24	1			1	5
일반직	8급	세무	4	3					1
일반직	8급	사회복지	16	8				1	7
일반직	8급	전산	1	1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보건소	농업기 술훈터		
일반직	8급	농업	3				3		
일반직	8급	녹지	2	1			1		
일반직	8급	해양수산	5	5					
일반직	8급	환경	1	1					
일반직	8급	보건·세무	1	1					
일반직	8급	의료기술	6			6			
일반직	8급	보건진료	6			6			
일반직	8급	시설	11	7					4
일반직	8급	방재안전	1	1					
일반직	8급	행정·세무	5	2					3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	12	3				1	8
일반직	8급	행정·농업·시설	14	3			1	1	9
일반직	8급	행정·전산	2	2					
일반직	8급	행정·해양수산·전산	1	1					
일반직	8급	행정·전산·사서	1	1					
일반직	8급	행정·환경	4	3					1
일반직	8급	행정·시설	12	12					
일반직	8급	행정·시설·공업	1	1					
일반직	8급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1					
일반직	8급	농업·녹지	1				1		
일반직	8급	전산·방송통신	3	3					
일반직	8급	해양수산·시설	1	1					
일반직	8급	보건·간호	8			8			
일반직	8급	행정·보건·환경	3	3					
일반직	8급	운전	7	6		1			
일반직	8급	속기	2		2				
일반직	8급	공업	7	5					2
일반직	9급 합계		69	38(2)	1	3	4	2	21
일반직	9급	행정	20	13(2)	1				6
일반직	9급	세무	4	2					2
일반직	9급	사회복지	7	2				1	4
일반직	9급	농업	1				1		
일반직	9급	해양수산	2	2					
일반직	9급	환경	3	3					
일반직	9급	시설	5	2					3
일반직	9급	방재안전	1	1					
일반직	9급	의료기술	1			1			
일반직	9급	행정·시설	8	8					
일반직	9급	행정·세무·전산	2	1					1
일반직	9급	행정·사회복지	3	2					1
일반직	9급	행정·해양수산	1	1					
일반직	9급	행정·농업·녹지·공업	6	1			2		3

직종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면
						보건소	농업기 술훈터		
일반직	9급	행정·전산·보건	1			1			
일반직	9급	운전	2			1	1		
일반직	9급	사무운영	2					1	1
일반직	전문 경력관 나군	농기계교관	1				1		
별정직계	별정8급 상당	일반비서	1	1					
연구직계	연구사	기록연구	1	1					
지도직계	지도사	농촌지도	27				27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93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13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기준점) 고시내역

[남해군]

연 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 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세좌표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	도근점	19164	중부	153603.12 293435.26	253911.964 293509.852	5.237	34°52'36.7247"	128°01'22.0377"	2021-06-18	창선면 가인리 736-3	표절	남해군정	신규
2	도근점	19165	중부	153513.08 293383.15	253821.920 293457.738	4.616	34°52'33.8205"	128°01'19.9498"	2021-06-18	창선면 가인리 737-1	표절	남해군정	신규
3	도근점	19166	중부	153420.97 293365.82	253729.816 293440.411	3.597	34°52'30.8379"	128°01'19.2306"	2021-06-18	창선면 가인리 산178-3	표절	남해군정	신규
4	도근점	19167	중부	153323.80 293369.55	253632.648 293444.139	3.105	34°52'27.6840"	128°01'19.3384"	2021-06-18	창선면 가인리 735	표절	남해군정	신규
5	도근점	19168	중부	153191.63 293426.03	253500.470 293500.624	4.072	34°52'23.3768"	128°01'21.5090"	2021-06-18	창선면 가인리 산178-29	표절	남해군정	신규
6	도근점	19169	중부	153044.10 293422.10	253352.950 293496.692	3.844	34°52'18.5917"	128°01'21.2950"	2021-06-18	창선면 가인리 산178-5	표절	남해군정	신규
7	도근점	19170	중부	152943.24 293448.60	253252.084 293523.193	3.694	34°52'15.3103"	128°01'22.2977"	2021-06-18	창선면 가인리 산178-31	표절	남해군정	신규
8	도근점	19171	중부	152811.06 293529.57	253119.909 293604.164	3.364	34°52'10.9950"	128°01'25.4322"	2021-06-18	창선면 가인리 725-3	표절	남해군정	신규
9	도근점	19172	중부	152931.46 293617.85	253240.304 293692.444	9.316	34°52'14.8720"	128°01'28.9560"	2021-06-18	창선면 오용리 1370	표절	남해군정	신규
10	도근점	19173	중부	152684.43 293690.38	252993.282 293764.972	7.088	34°52'6.8332"	128°01'31.7117"	2021-06-18	창선면 오용리 산4-1	표절	남해군정	신규
11	도근점	19174	중부	152629.68 293830.53	252938.529 293905.127	14.915	34°52'5.0102"	128°01'37.2070"	2021-06-18	창선면 오용리 1361	표절	남해군정	신규
12	도근점	19175	중부	152626.08 293881.99	252934.930 293956.580	16.166	34°52'4.8763"	128°01'39.2311"	2021-06-18	창선면 오용리 1235-3	표절	남해군정	신규
13	도근점	19176	중부	152584.38 293943.72	252893.235 294018.319	14.736	34°52'3.5029"	128°01'41.6446"	2021-06-18	창선면 오용리 산6-25	표절	남해군정	신규

남해군 고시 제2021 - 95호

남해군계획시설(공공청사:남해군청)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21-64호(2021.04.23.)로 최종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되고, 남해군 고시 제2020-80호(2020.05.26.)로 최종 실시계획 고시된 군계획시설(공공청사:남해군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청사신축추진단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28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위치 (변경없음)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공공청사:남해군청)사업
 - 명칭 : 공공청사(남해군청) 조성사업
-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변경)
 - 면적 : 16,069㎡→18,395㎡(증2,326㎡)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변경)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도시건축과(☎055-860-3414), 청사건축추진단(☎055-860-8833)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1. 토지조서(총괄)

■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구 분	합 계		국 유 지		공 유 지		공유지/사유지		사 유 지		비고
	필지수	면 적(m ²)	필지수	면 적(m ²)	필지수	면 적(m ²)	필지수	면 적(m ²)	필지수	면 적(m ²)	
합계	기정	70	16,069	5	744	7	8,093	-	-	58	7,232
	변경	92	18,395	7	766	49	13,974	2	381	34	3,274
	증감	20	1,945	2	22	42	5,881	2	381	감24	감3,958
대	기정	66	15,365	3	79	5	8,054	-	-	58	7,232
	변경	83	17,591	5	116	42	13,820	2	381	34	3,274
	증감	15	1,845	2	37	37	5,766	2	381	감24	감3,958
도	기정	-	-	-	-	-	-	-	-	-	-
	변경	4	22	-	-	4	22	-	-	-	-
	증감	4	22	-	-	4	22	-	-	-	-
전	기정	4	704	2	665	2	39	-	-	-	-
	변경	5	782	2	650	3	132	-	-	-	-
	증감	1	78	-	감15	1	93	-	-	-	-

2. 지목별 토지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계	기정	70	16,069	100.0
	변경	92	18,395	100.0
	증감	20	1,945	-
대	기정	66	15,365	95.6
	변경	83	17,591	95.6
	증감	15	1,845	-
도	기정	4	704	4.4
	변경	5	782	4.3
	증감	1	78	감0.1
전	기정	-	-	-
	변경	4	22	0.1
	증감	4	22	0.1

3. 소유자별 토지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계	기정	70	16,069	100.0
	변경	92	18,395	100.0
	증감	20	1,945	-
국유지	기정	5	744	4.6
	변경	7	766	4.1
	증감	2	22	감0.5
공유지 (남해군)	기정	7	8,093	50.4
	변경	49	13,974	76.0
	증감	42	5,881	25.6
공유지/ 사유지	기정	-	-	-
	변경	2	381	2.1
	증감	2	381	2.1
사유지	기정	58	7,232	45.0
	변경	34	3,274	17.8
	증감	감24	감3,958	감27.2

4. 편입토지조서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24,685	16,069					
1	남해읍	북변리	137	6	대	1,621	1,281	남해군				
2	남해읍	북변리	138	8	대	334	196	박*석 이*엽 박*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22번길 37-16 405호(양지빌2차)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청로1가, 남해군지부)	근저 당권
3	남해읍	북변리	138	10	대	67	44	기획 재정부				
4	남해읍	북변리	139	4	대	138	74	한*준 최*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2			
5	남해읍	북변리	140	5	대	686	686	남해군				
6	남해읍	북변리	140	13	대	45	45	이*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34 목동 금호1차아파트 101-1203			
7	남해읍	서변리	17	2	도	340	24	남해군				
8	남해읍	서변리	18	3	대	13	7	남해군				
9	남해읍	서변리	18	5	대	156	12	이*자	18-5			
10	남해읍	서변리	18	7	대	30	29	기획 재정부				
11	남해읍	서변리	18	9	대	6	6	기획 재정부				
12	남해읍	서변리	20	3	도	295	15	남해군				
13	남해읍	서변리	20	4	대	170	87	구*업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68 1002호 (보성 노블레스 아파트)			
14	남해읍	서변리	20	5	대	170	87	정*수	20-5			
15	남해읍	서변리	24	1	대	6,077	6,077	남해군				
16	남해읍	서변리	24	3	도	83	83	국토 교통부				
17	남해읍	서변리	24	6	대	214	175	송*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17	남해 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17	근저 당권
18	남해읍	서변리	24	14	대	8	8	김*범	29-3			
19	남해읍	서변리	24	21	대	5	5	박*근	25-2	남해신용 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5	가압 류

남 해 군 공 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0	남해읍	서변리	25	2	대	244	244	김*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74-4 현대아파트 101-105			
21	남해읍	서변리	25	3	대	240	191	공*성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5-3			
22	남해읍	서변리	25	4	대	205	160	최*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21번가길 9-1			
23	남해읍	서변리	25	5	대	411	410	이*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34 목동 금호1차아파트 101-1203			
24	남해읍	서변리	25	7	대	152	57	이*석	25-7			
25	남해읍	서변리	25	12	대	5	3	남해군				
26	남해읍	서변리	26	1	대	39	13	이*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20 101동1104호 (남해 평리 휴먼시아)	새남해 새마을 금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70-1	근저당권
27	남해읍	서변리	26	8	대	47	14	정*심	아산리 396			
28	남해읍	서변리	28	1	대	172	141	송*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17	남해 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17	근저당권
29	남해읍	서변리	28	2	대	145	113	이*애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19	남해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19	근저당권
30	남해읍	서변리	28	3	대	198	146	고*숙	부산 북구 화명동 2262 대우 리버파크 아파트 108-404			
31	남해읍	서변리	28	4	대	230	163	박*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25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25	근저당권
32	남해읍	서변리	28	6	대	66	50	이*자 설*정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7-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회전로 65-9	송순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17-5	가등기권자
33	남해읍	서변리	29	1	대	256	256	김*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40-3			
34	남해읍	서변리	29	2	대	407	407	김*근	29-2			
35	남해읍	서변리	29	3	대	145	145	김*범	북변동 300-28			
36	남해읍	서변리	29	4	대	139	139	김*범	북변동 300-28			
37	남해읍	서변리	29	5	대	69	69	김*자	29-5	남해 단위농업 협동조합	남군 남해읍 북변동 100-9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8	남해읍	서변리	30		대	340	340	조*산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빛담촌길 17-8	남해농업협동조합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100-9	근저당권
39	남해읍	서변리	31		대	217	217	고*훈	31			
40	남해읍	서변리	33	2	대	136	136	김*애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4-18			
								문*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 209동1008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41	남해읍	서변리	34	1	대	129	129	이*목	서울 종로구 충신동 1-308	진주 원예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689 (초전동, 초전지점)	근저당권
42	남해읍	서변리	34	2	대	265	265	임*숙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21번가길 14-4			
								임*호	울산 중구 태화동 412-2 동부아파트 101-603			
43	남해읍	서변리	35		대	63	63	조*자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5			
44	남해읍	서변리	36	1	대	201	201	정*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8길 8106동 315호 (거여동 거여1단지 아파트)			
45	남해읍	서변리	37	1	대	149	149	김*권	37			
46	남해읍	서변리	37	2	대	108	108	김*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번길 58 101동 106호 (외동 에스앤티 중공업(주)사원아파트)	남해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5	근저당권
47	남해읍	서변리	37	3	대	92	92	정*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34-19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남해군지부)	근저당권
48	남해읍	서변리	38		대	147	137	김*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59번길 18-5			
49	남해읍	서변리	39	1	대	159	159	박*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4-19	새남해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탐동로 40	근저당권
50	남해읍	서변리	39	2	대	10	10	정*엽	37			
51	남해읍	서변리	39	3	대	60	60	정*엽	37			
52	남해읍	서변리	39	5	대	102	102	김*권	37-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3	남해읍	서변리	39	7	대	106	106	김*권	37-1			
54	남해읍	서변리	39	9	대	46	46	송*심	이동면 난음리 1700			
55	남해읍	서변리	39		대	144	46	정*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12 주공1단지아파트 127-401			
56	남해읍	서변리	41	6	대	49	8	박*숙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로 59번길 17			
57	남해읍	서변리	44		대	98	45	임*주	18-5			
58	남해읍	서변리	46		대	103	29	김*철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로 65	창선 새마을 금고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81	근저당권
59	남해읍	서변리	47		대	301	295	최*을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59번길 16-4	남해신용협동조합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40-6	근저당권
60	남해읍	서변리	49	1	대	208	208	류*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39			
61	남해읍	서변리	49	2	대	255	255	김*훈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4-7	남해군 수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	근저당권
62	남해읍	서변리	50	1	대	246	111	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21번가길 24-11 에이동 202호 (임페리얼빌리지)			
63	남해읍	서변리	51		대	116	101	정*균	51			
64	남해읍	서변리	52		대	146	64	윤*수	진주시 평거동 717-2 동신맨션 아파트 에이동 105	신평 새마을 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234 (평거동)	근저당권
65	남해읍	서변리	53	1	대	74	1	김*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6	새남해 새마을 금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185	근저당권
66	남해읍	서변리	65	1	대	128	93	박*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64-13호	남해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5	근저당권 지상권
67	남해읍	서변리	65	2	대	193	144	정*순	65-2			
68	남해읍	서변리	65	3	대	56	20	이*석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 41-4 (수정동)			
69	남해읍	서변리	65	4	대	160	85	윤*숙	65-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청정로 1가 75 (남해군지부)	근저당권
70	남해읍	서변리	490		도	6,089	582	기획재정부				

< 변경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18,395	18,395					
1	남해읍	북변리	137	6	대	1,621	1,621	남해군	공			
2	남해읍	북변리	138	3	대	6	6	기획재정부	국			
3	남해읍	북변리	138	8	대	334	334	남해군	공			
4	남해읍	북변리	138	10	대	67	67	기획재정부	국			
5	남해읍	북변리	139	4	대	74	74	한*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2			1/2
								최*순				1/2
6	남해읍	북변리	139	6	대	64	64	한*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2			1/2
								최*순				1/2
7	남해읍	북변리	140	5	대	686	686	남해군				
8	남해읍	북변리	140	13	대	45	45	이*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34 목동 금호1차아파트 101-1203			
9	남해읍	북변리	224	7	대	5	5	남해군	공			
10	남해읍	북변리	224	10	대	5	5	남해군	공			
11	남해읍	서변리	17	2	도	78	78	남해군	공			
12	남해읍	서변리	17	3	대	40	40	남해군	공			
13	남해읍	서변리	18	3	대	11	11	남해군	공			
14	남해읍	서변리	18	5	대	12	12	이*자	서변리 18-5			가압류
15	남해읍	서변리	18	7	대	30	30	기획재정부	국			
16	남해읍	서변리	18	9	대	6	6	기획재정부	국			
17	남해읍	서변리	18	11	대	144	144	이*자	서변리 18-5			가압류
18	남해읍	서변리	20	3	도	37	37	남해군	공			
19	남해읍	서변리	20	4	대	170	170	남해군	공			
20	남해읍	서변리	20	5	대	170	170	정*수	서변리 20-5			
21	남해읍	서변리	24	1	대	6,077	6,077	남해군	공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2	남해읍	서변리	24	3	도	83	83	기획재정부	국			
23	남해읍	서변리	24	6	대	214	214	남해군	공			
24	남해읍	서변리	24	14	대	8	8	남해군	공			
25	남해읍	서변리	24	21	대	5	5	박*근	25-2			
26	남해읍	서변리	25	2	대	244	244	김*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74-4 현대아파트 101-105			
27	남해읍	서변리	25	3	대	240	240	남해군	공			
28	남해읍	서변리	25	4	대	160	160	최*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21번가길 9-1			
29	남해읍	서변리	25	5	대	410	410	이*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34 목동금호1차아파트 101-1203			
30	남해읍	서변리	25	7	대	57	57	이*석	서변리 25-7			
31	남해읍	서변리	25	12	대	5	5	남해군	공			
32	남해읍	서변리	25	14	대	45	45	최*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21번가길 9-1			
33	남해읍	서변리	25	15	대	1	1	이*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934 목동금호 1차아파트 101-1203			
34	남해읍	서변리	25	16	대	95	95	이*석	서변리 25-7			
35	남해읍	서변리	26	1	대	39	39	이*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20 101동1104호 (남해평리 휴먼시아)	새남해 새마을 금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70-1	근저당권
36	남해읍	서변리	26	3	전	3	3	남해군	공			
37	남해읍	서변리	26	7	전	4	4	남해군	공			
38	남해읍	서변리	26	8	대	14	14	정*심	아산리 396			
39	남해읍	서변리	26	11	대	1	1	남해군	공			
40	남해읍	서변리	26	18	전	5	5	남해군	공			
41	남해읍	서변리	26	20	전	10	10	남해군	국			
42	남해읍	서변리	26	21	대	33	33	정*심	아산리 396			
43	남해읍	서변리	28	1	대	172	172	남해군	공			
44	남해읍	서변리	28	2	대	145	145	남해군	공			
45	남해읍	서변리	28	3	대	198	198	남해군	공			

남 해 군 공 보

(22) 제 695 호

2021년 6월 28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6	남해읍	서변리	28	4	대	163	163	박*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25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남해지점)	근저당권
47	남해읍	서변리	28	6	대	66	66	이*자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7-2			1/2
								설*정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회전로 65-9			1/2
48	남해읍	서변리	28	7	대	67	67	박*문	망운로19번길 25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남해지점)	근저당권
49	남해읍	서변리	29	1	대	256	256	남해군	공			
50	남해읍	서변리	29	2	대	407	407	남해군	공			
51	남해읍	서변리	29	3	대	145	145	남해군	공			
52	남해읍	서변리	29	4	대	139	139	남해군	공			
53	남해읍	서변리	29	5	대	69	69	남해군	공			
54	남해읍	서변리	30		대	340	340	남해군	공			
55	남해읍	서변리	31		대	217	217	남해군	공			
56	남해읍	서변리	33	2	대	136	136	남해군	공			
57	남해읍	서변리	34	1	대	129	129	남해군	공			
58	남해읍	서변리	34	2	대	265	265	임*숙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21번가길 14-4			11/13
								남해군	공			2/13
59	남해읍	서변리	35		대	63	63	남해군	공			
60	남해읍	서변리	36	1	대	201	201	남해군	공			
61	남해읍	서변리	37	1	대	149	149	남해군	공			
62	남해읍	서변리	37	2	대	108	108	김*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번길 58 101동 106호 (외동 에스엔티 중공업(주)사원아파트)	남해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회전로 95번길 5	근저당권
63	남해읍	서변리	37	3	대	92	92	정*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34-19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남해군지부)	근저당권
64	남해읍	서변리	38		대	147	147	남해군	공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5	남해읍	서변리	39	1	대	159	159	박*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4-19	새남해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40	근저당권
66	남해읍	서변리	39	2	대	10	10	남해군	공			
67	남해읍	서변리	39	3	대	60	60	남해군	공			
68	남해읍	서변리	39	5	대	102	102	남해군	공			
69	남해읍	서변리	39	7	대	106	106	남해군	공			
70	남해읍	서변리	39	9	대	46	46	남해군	공			
71	남해읍	서변리	39	10	도	17	17	남해군	공			
72	남해읍	서변리	39	13	대	98	98	정*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12 주공1단지아파트 127-401			
73	남해읍	서변리	39		대	46	46	정*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12 주공1단지아파트 127-401			
74	남해읍	서변리	41	6	대	49	49	남해군	공			
75	남해읍	서변리	44		대	45	45	임*주	서변리 18-5			
76	남해읍	서변리	44	2	대	53	53	임*주	서변리 18-5			
77	남해읍	서변리	46		대	103	103	남해군	공			
78	남해읍	서변리	47		대	301	301	남해군	공			
79	남해읍	서변리	49	1	대	208	208	류*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39			
80	남해읍	서변리	49	2	대	255	255	김*훈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4-7	남해군 수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	근저당권
81	남해읍	서변리	50	1	대	246	246	남해군	공			
82	남해읍	서변리	51		대	116	116	정*영	울산광역시 중구 당산5길 41(우정동)			2/9
								남해군	공			7/9
83	남해읍	서변리	52		대	146	146	남해군	공			
84	남해읍	서변리	53	1	대	74	74	김*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6	새남해 새마을금고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185	근저당권
85	남해읍	서변리	65	1	대	128	128	남해군	공			
86	남해읍	서변리	65	2	대	193	193	남해군	공			
87	남해읍	서변리	65	3	대	56	56	이*석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 41-4 (수정동)			
88	남해읍	서변리	65	4	대	85	85	윤*숙	서변리 65-4			

남 해 군 공 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9	남해읍	서변리	65	56	대	75	75	윤*숙	서변리 65-4			
90	남해읍	서변리	490	30	대	7	7	기획재정부	국			
91	남해읍	서변리	490	31	대	12	12	정*심	창원시 용호동 69 용지아파트 213-205			
92	남해읍	서변리	490	34	도	567	567	기획재정부	국			

5.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비 고
									성명	주소			
1	남해읍	북변리	139-4	대	망운로 9번길 2	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 스투브	406.46㎡	한*준 외 1				
						건축물 2	블록조 및 철파이프	49.45㎡					
						지장물	물탱크 등	4종					
						영업 1	CU***	1식	아**				
						영업 2	마***	1식	장**				
						영업 3	글***	1식	김**				
						영업 4	막***	1식	아**				
2	남해읍	서변리	18-5	대	망운로 9번길 10	건축물	블록조 강판지붕	173.70㎡	이*자				
						지장물	대문 등	7종					
						수목		1주					
						영업 1	남**	1식	암**				
						영업 2	동**	1식	박**				
3	남해읍	서변리	20-5	대	망운로 9번길 14	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벽돌 스투브	288.50㎡	정*수				
						건축물 2	판넬조 판넬지붕	18.00㎡					
						지장물	물탱크 등	5종					
						영업 1	한**	1식	탁**				
						영업 2	화**	1식	박**				
4	남해읍	서변리	25-2	대	망운로 17-5	건축물	벽돌조 스투브	98.00㎡	김*희				
						지장물	물탱크 등	11종					
						수목		5주					
5	남해읍	서변리	25-4	대	망운로 19번길 13	건축물	벽돌조 스투브 등	105.33㎡	최*규				
						지장물	태양광 시설 등	12종					
6	남해읍	서변리 북변리	25-5 140-13	대	망운로 17	건축물 1	블록조 스투브	247.30㎡	이*호				
						건축물 2	벽돌조 스투브	41.70㎡					
						지장물	물탱크 등	20종					
						수목		29주					
						영업 1	옥**	1식	아**				
						영업 2	B**	1식	박**				
						영업 3	쭈**	1식	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비 고
									성명	주소			
7	남해읍	서변리	25-7	대	망운로 19번길 7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00.50㎡	아*석				
						지장물	물탱크 등	5종					
						수목		3주					
						영업	푸**	1식	최**				
8	남해읍	서변리	26-1 490-30	대	망운로 19번길 1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58.05㎡	아*호		***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지장물	옥탑화장실	1종					
						영업 1	이**	1식	이**				
						영업 2	남**	1식	김**				
9	남해읍	서변리	26-8 490-31	대	망운로 19번길 3	건축물	벽돌조 슬라브	97.20㎡	장*심				
						지장물	물탱크	1종					
						영업	서**	1식	장**				
10	남해읍	서변리	28-4	대	망운로 19번길 25	건축물	경량철골조 싱글지붕	110.00㎡	박*문		**은행	근저당권	
						지장물	대문 등	6종					
						수목		1주					
11	남해읍	서변리	34-2	대	망운로 9번길 14-15	건축물	목조스레트지붕	65.70㎡	임*숙 외 1				
						건축물 (기타)	블록조스레트지붕 등	39.50㎡					
						지장물	물탱크 등	6종					
						수목		1주					
12	남해읍	서변리	37-2	대	화전로 59번길 18-7	건축물	벽돌조슬라브지붕	117.40㎡	감*수		남해**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장물		10종					
13	남해읍	서변리	37-3	대	화전로 59번길 16-3	건축물	벽돌조슬라브지붕	87.38㎡	장*심		**은행	근저당권	
						지장물		7종					
14	남해읍	서변리	39-1	대	망운로 9번길 14-19	건축물	벽돌조슬라브지붕	179.80㎡	박*나		****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장물	태양광 등	10종					
15	남해읍	서변리	44	대	화전로 59번길 16	건축물	벽돌조슬라브지붕	142.90㎡	암*주				
						건축물 (기타)	블록조판넬지붕	12.20㎡					
						지장물		8종					
						수목		2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비 고
									성명	주소			
16	남해읍	서변리	49-1	대	망운로 9번길 14-5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107.80㎡	류*춘				
						건축물 (기타)	블럭조 스라브지붕	14.90㎡					
						지장물	물탱크 등	5종					
17	남해읍	서변리	49-2	대	망운로 9번길 14-7	건축물 1	일반철골조스라브지붕	88.44㎡	김*훈		남해군 *** 협동조합	근저당권	
						건축물 2	벽돌조 강판지붕	155.58㎡					
						지장물	물탱크 등	5종					
						영업	원**	1식	김**				
18	남해읍	서변리	51	대	망운로 9번길 18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68.20㎡	정*영				
						지장물	물탱크 등	5종					
						수목		2주					
19	남해읍	서변리	53-1	대	망운로 9번길 16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103.00㎡	김*태		*** 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건축물 (기타)	블럭조 스라브지붕	23.30㎡					
						지장물	물탱크 등	5종					
						영업	남**	1식	김**				
20	남해읍	서변리	65-3	대	망운로19번길 31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88.56㎡	이*석				
						지장물	물탱크	1종					
21	남해읍	서변리	65-4	대	망운로19번길 33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144.30㎡	윤*숙				
						지장물	물탱크 등	14식					
						수목		34주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893호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록물관리 관련 조문 신설, 기록물 관리 의무 부과
- 3. 주요내용
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기록물 관리 등 조문 신설
나. 현행 제15조 시행규칙을 제16조로 변경
-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7월 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65,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전화 055-860-30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21 - 906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가. 제명을 조례에 맞게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로 변경함
- 나.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급대행 반영
- 다.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안 제2조)
- 나. 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에 관한 표시(안 제3조)
- 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안 제4조)
- 라. 종량제 봉투의 공급대행(안 제8조)
- 마. 종량제 봉투 대금의 징수방법(안 제9조)
- 바. 생활폐기물 수거(안 제12조)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안전건설국 환경녹지과)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우52425)
- 전 화 : 055-860-3262, 팩스 :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전화 055-860-32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행업자의 처리능력과 대행 대상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 포함)
3.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의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폐기물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적정비용을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행금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행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에 관한 표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별 취급 종량제 봉투 구별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종량제 봉투의 표시는 남해군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 명칭, 연락처 등으로 하며 별표 2와 같다.

제4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이하 “판매소” 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판매소 지정 여부를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봉투 판매자” 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봉투 판매자는 별표 3에 따른 종량제 봉투 공급·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읍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봉투 판매자는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판매소 폐업·휴업 등의 신고) ① 봉투 판매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직권으로 판매소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투 판매자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봉투 판매가격은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3. 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한 종량제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4.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종량제 봉투의 공급대행)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선정하여 판매소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행업자”라 한다)가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금액은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급대행업자가 읍·면에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무상으로 한다.
- ③ 공급대행업자는 공급과정에서 종량제 봉투가 파손된 경우 봉투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 ④ 공급대행업자는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공급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되 공급정산서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공급한 대금을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읍면장은 월별 공급받은 종량제 봉투 등의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 대금의 징수방법) ① 군수는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 대금을 군수가 정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공급금액으로 한다.
- ③ 공급대행업자가 판매소로부터 종량제봉투 대금을 징수한 경우 군수는 징수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고지·수납한다.

제10조(폐기물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및 처리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처리장 반입 수수료 기록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 2. 청소차량 생활폐기물 반입(계량) 대장 (별지 제8호서식)
- 3.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계량) 대장 (별지 제9호서식)
- 4. 대형폐기물 처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1명당 월 30리터의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할 수 있다.

- ②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할 경우에는 읍면장은 관련대장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 감면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거)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책임수거한다. 다만 파업, 재난재해, 전염병 발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생활폐기물을 책임수거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봉투 판매자로 본다.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봉 투 용 량	규 격 (가로×세로,cm)	호 칭 두께 (mm)	용 도
5ℓ	26 × 46.5	0.020	일반용
10ℓ	33 × 56.5	0.020	일반용
20ℓ	42 × 69.5	0.025	일반용
50ℓ	56 × 91.5	0.035	일반용, 공공용

비고 : 1. PE봉투의 높이치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가로길이(cm)/n + 5cm} 과 접합가공 치수를 합한 것이다.

2. 여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되,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text{가로길이(cm)} / n + 5\text{cm}$$

[별표 2]

종량제 봉투의 사양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더 맑고 푸르게 (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반드시 품목별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묶어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수 있습니다.
4. 묶음선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5.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남 해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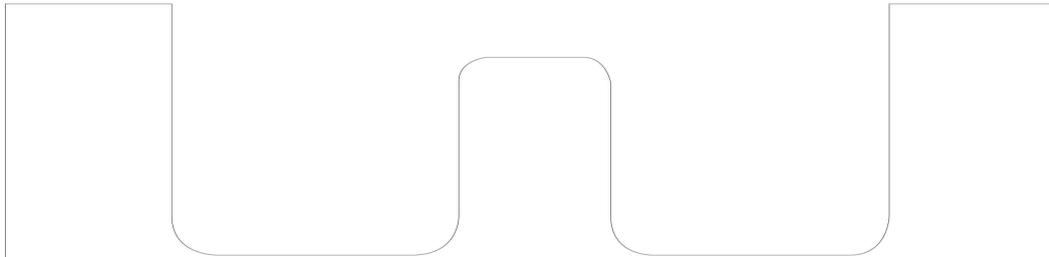
※ 연락처 : 남해군 환경녹지과(☎860-3261)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배출시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환경마크)

□ 공공용 봉투 50ℓ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더 맑고 푸르게 (50ℓ)

- 공 공 용 -

1. 공공용봉투는 거리청소, 환경정화활동 등에 발생한 폐기물만 담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용봉투 안에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에 가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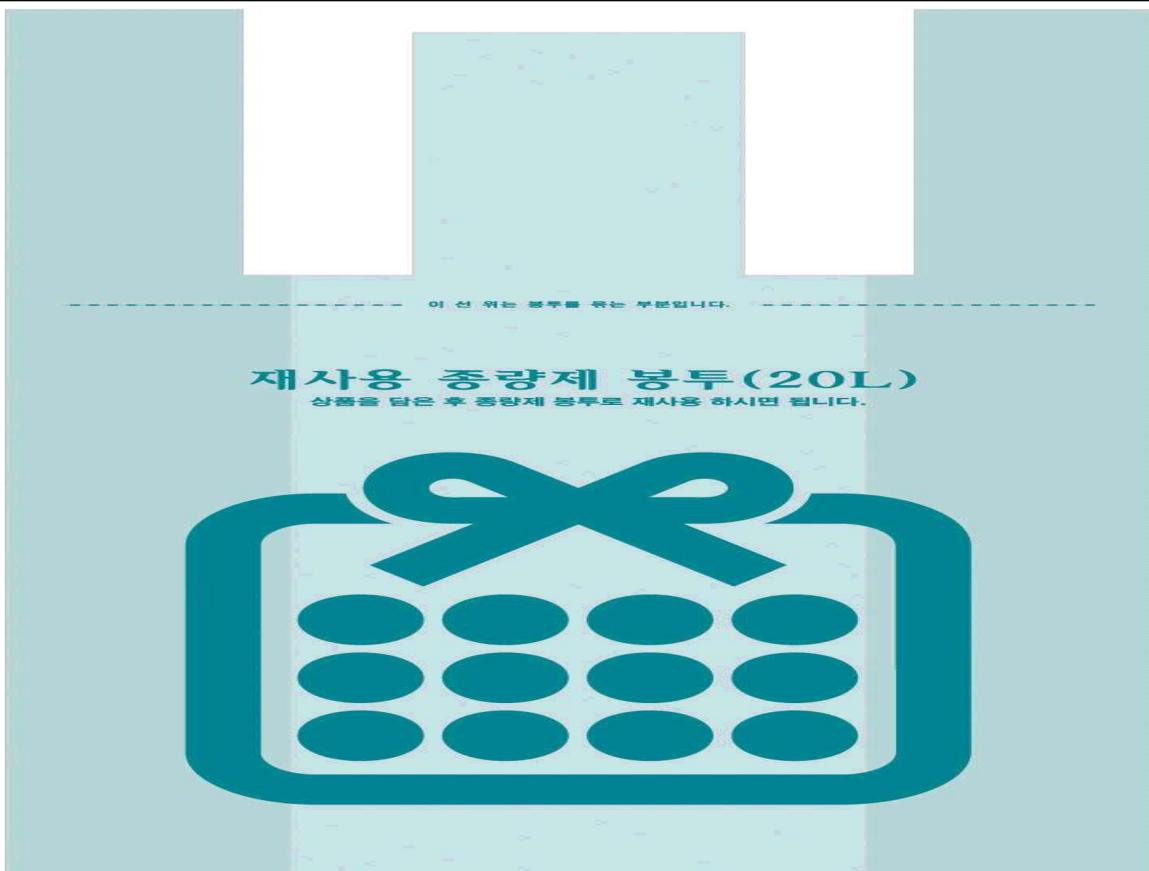
남 해 군 수

연락처 : 남해군 환경녹지과(☎ : 860-3261)

(주의)
- 이 봉투는 코퍼 밑에 앉으면 위험하므로 어린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이 고출력 또는 고가압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재사용 봉투 20ℓ



남 해 군

1.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반드시 품목별로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묶어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수 있습니다.
4. 묶음선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5. 종량제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의)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니 어린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고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배출시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 표시 및 번호
종량제 안내문 및 환경마크

• 연락처 : 남해군 환경녹지과 ☎ 860-3261

[별표 3]

종량제 봉투 공급·판매계약서

읍면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종량제 봉투의 공급과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급"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종량제 봉투를 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판매"라 함은 "을"이 수요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공급 및 판매) ① "갑"은 "을"에게 판매능력의 범위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봉투를 수요자에게 지정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제품을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파손, 수량부족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종량제 봉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4조 (가격) ①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군수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격으로 "을"에게 종량제 봉투를 공급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에서 규정한 종량제 봉투 가격을 고시할 때에는 가격변동 기준일 하루 전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납부) "을"은 종량제 봉투 공급가격을 종량제 봉투 인수전에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군금고에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영업상 준수사항) ① "을"은 종량제 봉투 보관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한 "갑"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홍보 및 종량제 봉투 판매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하며 재계약 여부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갑" 또는 "을"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변경) 본 계약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폐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의 관계 조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을"에게 최고하고 최고 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갑"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2. "을"이 계약 조항을 위배하였을 때
- 3. "을"이 3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한 때
- 4. 3개월 평균 판매량이 월평균 100매 이하일 때 (자연부락 단위 제외)
- 5. "을"이 고의적으로 "갑"의 활동을 방해하였을 때

제10조 (계약조문 해석) 본 계약조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 (기타) ① 제1조 내지 제10조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 읍 면 장 (인)

을 : 남해군 읍(면) 리 번지

○ ○ ○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의 위치			
판 매 소 구 분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 면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

처 리 기 간

즉 시

판 매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상 호		지 정 년 월 일	
	판매소위치		전 화 번 호	
변 경 을 받 고 자 하는사항	성 명			
	상 호			
	주 소			
	변 경 사 유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읍 면 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 원본	수 수 료
	없 음

남해군 공고 제2021 - 925호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군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3조~제4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실시 및 평가 (안 제5조~제8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안 제9조~제19조까지)

마.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20조)

-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

바. 주민참여단 설치·운영 (안 제21조~제26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7월 1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47,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전화 055-860-3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남해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남해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및 평가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3.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추진사업계획
- 2. 해당 연도 추진사업의 일정
- 3.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 간의 협조 사항
- 4. 해당 연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확보 방안
- 5. 그 밖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관련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포상 등) 군수는 여성친화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군민이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9조(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 3. 지역사회 안전증진
-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에 관련된 사업 추진 시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각 목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 및 교통관련 시설: 도로·교통·공원·녹지·하천·하수도 등
 - 가. 보행편의와 안전성
 -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 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등
 - 가. 여성·임산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내외적인 소통구조의 연결
 -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공동체 프로그램·마을 만들기 등
 -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확보

제14조(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의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군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마을·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특화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제20조제2항에 따라 기능을 대행하는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를 말한다), 주민참여단 등의 의견을 들어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돌봄사업 및 문화육구 충족 사업
2. 주민 재능 교육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제21조(군민참여단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을 둔다.

제22조(기능) ①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
2. 생활불편 사항 발굴 및 개선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모니터링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책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구성) ① 군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50명 이내의 군민으로 구성하며, 군민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민참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문분야의 군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운영)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을 운영한다.

-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군민참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반을 구성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군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민참여단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26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단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926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개정 이유

- 가.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체 조항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안 제5조~제10조)
 - 시행계획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
- 다. 양성평등 촉진 (안 제11조~제12조)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 라. 양성평등 참여·복지증진 및 문화 확산 등(안 제13조~제15조)
 - 여성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 양성평등주간, 여성친화도시 등
- 마.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용도 등 (안 제16조~제21조)

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8조)

- 2021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7월 1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47,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전화 055-860-3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개발·안전·예산·일자리·인사·양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여성단체 임원,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남해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성인지 교육) ①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남해군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2. 리더십 향상교육 및 워크숍 지원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비 지원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제14조(양성평등주간)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기념행사
-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
-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②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유치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4.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지원
- 5.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해당 연도의 이자수입금 전액 및 적립금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남해군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제7조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 업무담당 부서장
-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 업무담당 팀장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집행·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위촉된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제7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928호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18.9.28 시행)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남해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상위법령(「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18.9.28 공포)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변경

○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지정(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7월 1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47,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전화 055-860-3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남해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성별영향평가”란 남해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성별영향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한다.

-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 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3. 남해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의결 전
-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제출 전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평가대상의 목적 및 개요
- 2. 평가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부서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 1. 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 4.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929호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도)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도)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남 해 군 수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도)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가. 군관리계획(클라인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도) 결정(변경)
 - 1)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 2) 규 모
 - 클라인 도이치랜드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 A = 40,342㎡
 - 클라인 도이치랜드 지구단위계획구역 : A = 40,342㎡
 - 군계획시설(제도) : L = 1,920m, A = 17,421㎡
 - 나. 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 <붙임>

다. 관련도서 : 실음생략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실음생략

3. 관계도서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4. 공람·공고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방법

가.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사항(2가지 방법 중 선택)

1) 남해군 도시건축과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단체(개인)는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남해군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붙임>

■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궤도)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A	클라인 도이치랜드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40,34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클라인 도이치랜드 개발진흥지구	○신설 A=40,342㎡	○ 클라인 도이치랜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하여 개발진흥지구를 신규로 지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A	클라인 도이치랜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40,34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클라인 도이치랜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40,342㎡	○ 산림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형 휴식·체험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40,342	100.0	
I.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계	16,381	40.6	
	근린생활시설	6,527	16.2	주차장 포함
	트리하우스	1,258	3.1	
	놀이시설	3,587	8.9	
	코스터	1,676	4.1	
	코스터승강장	203	0.5	
	모노레일(궤도)	3,130	7.8	군계획시설(궤도)중복
II. 공공시설 용지	소계	10,462	26.0	
	진입도로	6,157	15.3	B=10m, L=406m
	주차장	3,213	8.0	
	단지내도로	961	2.4	
	카트주차장	131	0.3	
III. 녹지용지	소계	13,499	33.4	
	조성녹지	1,554	3.9	
	원형녹지	11,945	29.5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406	삼동면 물건리 386-5	삼동면 물건리 산84-11	일반 도로	-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A	○신설 -B = 10m, L = 406m	○ 클라인 도이치랜드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삼동면 물건리 산93-3번지 일원	-	증)3,213	3,213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신설 (A=3,213㎡)	○클라인 도이치랜드 및 독일마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I	16,381	I -1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6,527	근린생활시설
			I -2	삼동면 물건리 산63번지 일원	1,258	트리하우스
			I -3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1,787	놀이시설
			I -4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1,800	놀이시설
			I -5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1,676	코스터
			I -6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203	코스터승강장
			I -7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3,130	모노레일 군계획시설(제도)중복

2)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II	1,092	II -1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961	단지내도로
			II -2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131	카트주차장

3) 녹지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III	13,499	III -1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516	조성녹지
			III -2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1,038	조성녹지
			III -3	삼동면 물건리 산63번지 일원	7,183	원형녹지
			III -4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2,929	원형녹지
			III -5	삼동면 물건리 산63번지 일원	455	원형녹지
			III -6	삼동면 물건리 산86번지 일원	1,378	원형녹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차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구 분	계획내용	
I -1	용 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제6호 유원시설업, 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200%	
	높 이 배 치	• 6층이하 • 도면참조	

도면표시번호	구 분		계획내용
I-2 ~ 6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제6호 유원시설업, 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용적률	• 16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도면참조
I-7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용적률	• 16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도면참조

2) 공공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1	용도	지정용도	• 단지내도로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II-2	용도	지정용도	• 카트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3) 녹지용지

도면표시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I-1 III-2	용도	지정용도	• 조성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III-3 III-4 III-5 III-6	용도	지정용도	• 원형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4.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궤도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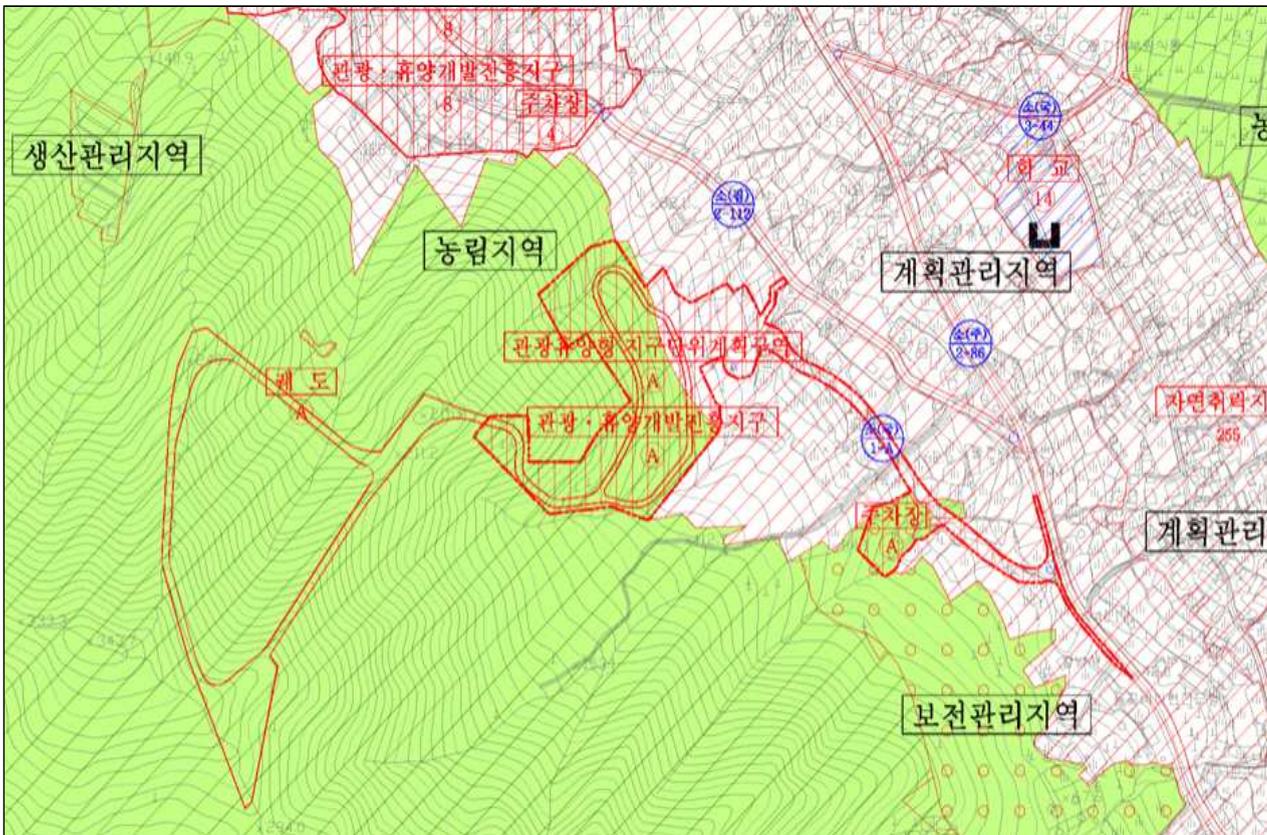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m)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A	궤도	삼동면 물건리 산84-6	삼동면 물건리 산84-6	-	1,920 (830)	17,421 (3,771)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결정

※ ()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결정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궤도	○신설 A=17,421m ²	○남해군의 차별화된 관광시설 도입과 관광·레저·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궤도시설을 신설함

■ 군관리계획 결정도



남해군 공고 제2021 - 933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세부지원기준 항목을 일부 개정하고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내실있는 법제정비를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변경(안 별표 1)

1) 지원내용 : 셋째아이 이상 5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인상

※ 일시금 200만원, 매월20만원× 40회

나. 결혼장려금 신설 기준 마련 (안 제2조, 안 제3조, 안 별표3)

1) 결혼장려 지원 : 결혼당사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결혼하는 경우에 지원

2) 결혼장려 지원대상 :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지원내용 : 부부당 200만원(3회 분할)

다.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 변경(안 제3조, 별표 2)

- 1)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람
- 2) 지원내용 : 세대당 2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타지자체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세대는 신청제외)

라.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안 제3조, 별표 3)

- 1)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군 소재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한 6세 미만 영유아로서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2) 지원내용 : 1인당 95천원(1회)

마.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안 제3조, 별표 3)

- 1)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대상 : 군으로 5명이상 전입시킨 실적이 있는 남해군민
- 2) 지원내용 : 5명 이상 ~ 9명 미만 전입실적이 있는 경우(50만원), 10명 이상 전입실적이 있는 경우(100만원)

바.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안 제3조, 별표 3)

- 1)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2)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2회 분할)

사.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안 제3조, 별표 3)

- 1)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2)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권 50매(500원/1매)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1년 7월 14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37, 팩스 055-860-375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860-86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결혼장려 지원”이란 결혼당사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결혼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다자녀 지원대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은 부 또는 모가 제3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셋째아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제3조제3호가목 중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은”으로,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을 “군”으로, “전입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주민세 지원, 주택수리비”를 “주민세”로, “주차장 이용권 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주민세, 주택수리비”를 “주민세”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전입신고 일자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본문 중 “사람.”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빈집수리비 지원대상은 가목을 준용하되,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리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 한한다.
- 6. 결혼장려 지원대상: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7. 임산부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8. 어린이집 신입생 지원대상: 군 소재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한 6세 미만 영유아로서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9.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대상: 군으로 5명이상 전입시킨 실적이 있는 남해군민

제4조제1호 중 “출산장려”를 “출산장려 및 다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 2. 전입자 및 전입학생 지원: 별표 2에 따른다.
- 3. 결혼장려·임산부·어린이집 신입생 및 인구증대 유공 인센티브 지원: 별표 3에 따른다.

제5조의 제목 “(인구증대시책 추진협의회 설치·운영)”을 “(인구증대시책 추진협의회 설치·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예산업무·복지업무·인구증대 업무·영농정착 지원업무·임산부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 2. 군내 비영리단체장, 남해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인구증대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일정직위를 요건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종료 시 해당 임기가 종료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⑥ 군수는 협의회가 인구증대를 위하여 건의한 사항을 인구증대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증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추진협의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제5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별표 1]

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담당부서
출산장려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첫째아이: 3백만원 ·일시금30만원, 매월15만원×18회 ○둘째아이: 4백만원 ·일시금40만원, 매월15만원×24회 ○셋째아이 이상: 10백만원 ·일시금200만원, 매월20만원×40회	청년혁신과
	출산축하선물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산 축하선물 제공 ·지원품목: 내의, 목욕타올 등 ·지원금액: 6만원 상당	보건소
	산모산후조리비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인 1백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1인 50만원 ○다태아 출산의 경우: 1인 초과인원에 대하여 1인당 50% 가산 지급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 ○다태아 출산: 1인 초과인원에 대하여 1인당 100% 가산 지급	보건소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 ·지원횟수: 3회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보건소
다자녀지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지원	조례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	○출생일 또는 전입일 다음달 부터 만6세미만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최대 71개월까지 지원	청년혁신과
	남해사랑우대인증발급	조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우대기간: 2년 ○이용시설 ·노량거북선: 무료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50% 할인	청년혁신과

[별표 2]

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담당부서
전입 지원	전입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남해화폐 지급 ·1인: 10만원 상당 ·2인 이상: 30만원 상당 ·4인 이상: 70만원 상당	민원봉사과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인균등분주민세 지원 ·지원기간: 2년간 ·지원금액: 부과금액 기준	재무과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	<u>조례 제3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u>	○세대당 2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타지자체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세대는 신청제외) ·지원기간: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내 ·지원횟수: 1회 ·연도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도시건축과
	영농정착 지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전입자가 농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세대당 100만원 범위에서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 지원 ·지원기간: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 ·지원횟수: 1회(세대당 1건에 한함)	농축산과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지원대상: 전입신고 건당 최대 1대분 ·지원수량: 50매(500원/1매)	건설교통과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	조례 제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우대기간: 2년 ○이용시설 ·노량거북선: 무료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50% 할인	청년혁신과

구분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담당부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1인 전입 : <u>300리터</u> ·2인 이상 전입 : <u>600리터</u>	환경녹지과
전입 학생 지원	전입 초·중·고 학생 지원	조례 제3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남해화폐 지급 ·지원횟수: 재학중 1회에 한함 ·지원금액: 10만원 상당	청년혁신과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3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만, 지원기간 내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입대, 휴학, 자퇴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외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 (※학기별 30만원) ○기숙사 외에 입주하는 경우 ·지원횟수: 재학중 1회에 한함 ·지원방법: 남해화폐 ·지원금액: 10만원 상당	청년혁신과

[별표 3]

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시 책 명	적용기준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결 혼 장 려 지 원	주 거 자 금 대 출 이 자 지 원	조례 제3조제5호에 해당 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 이자 이율의 1.5%(최대 1백만원 한도) ○지원횟수: 연1회. 대상자별 1회 에 한함. ○지원기간: 최장 3년	창년혁신과
	결 혼 장 려 금 지 원	조례 제3조제6호에 해당 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단 부부 중 1명이 만 50세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당 200만원(3회 분할) ·1회차: 최초 신청 시 100만원 ·2회차: 최초 지급일부터 1년 후 50만원 ·3회차: 최초 지급일부터 2년 후 50만원 (다만, 부부 중 한명이라도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창년혁신과
임 산 부 지 원	임 산 부 교 통 카 드	조례 제3조제7호에 해당 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인당 20만원(2회 분할) ·임산부 등록 시 10만원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10 만원	보 건 소
	임 산 부 공 영 주 차 장 이 용 권	조례 제3조제7호에 해당 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권 50매(500원/1 매)	보 건 소
어 린 이 집 신 입 생 지 원	어 린 이 집 신 입 생 지 원	조례 제3조제8호에 해당 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인당 : 95천원(1회)	주 민 복 지 과
인 구 증 대 유 공 인 세 티 브	인 구 늘 리 기 유 공 인 세 티 브	조례 제3조제9호에 해당 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5명 이상 ~ 9명 미만 전입실적이 있는 경우: 50만원 ○10명 이상 전입실적이 있는 경우 : 100만원 ※전입실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전입자 인위임 ※전입자는 조례 제3조제3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창년혁신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 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결혼장려 지원</u>”이란 결혼당사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결혼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지원 대상)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다자녀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가.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 한 경우 또는 제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를 포함하여 전입 한 경우</p> <p>나.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 부모와 셋째아 이상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p> <p>3. 전입자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p> <p>가. 전입축하금 지원대상: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한다.</p>	<p>제3조(지원 대상)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다자녀 지원대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은 부 또는 모가 제3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셋째아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u></p> <p>3. ----- -----.</p> <p>가. ----- 지원대상은 ----- ----- ----- ----- 군 ----- ----- ----- 사람</p>

현 행	개 정 안
<p>나. <u>주민세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영농정착 지원, 주차장 이용권 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u>대상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만, <u>주민세, 주택수리비</u> 지원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p> <p><신 설></p> <p>4. 전입 학생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p> <p>가. (생 략)</p> <p>나. 전입 대학생 지원대상: <u>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으로 한다.</u></p> <p>5.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생 략)</p> <p>나. 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한 주택 외에 부부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사람. 다만, <u>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u></p>	<p>나. <u>주민세</u> ----- ----- <u>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 종량제 봉투</u> ----. ---- <u>주민세</u> ----- ----- -----.</p> <p>다. <u>빈집수리비 지원대상은 가목을 준용하되,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리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 한한다.</u></p> <p>4.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군</u>----- ----- ----- ----- -----.</p> <p>5.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 ----- <u>사람 <단서 삭제></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6. <u>결혼장려 지원대상: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u></p>
<p><신 설></p>	<p>7. <u>임산부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u></p>
<p><신 설></p>	<p>8. <u>어린이집 신입생 지원대상: 군 소재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한 6세 미만 영유아로서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u></p>
<p><신 설></p>	<p>9. <u>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대상: 군으로 5명이상 전입시킨 실적이 있는 남해군민</u></p>
<p>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인구증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출산장려 지원: 별표 1에 따른다.</u> 2. <u>다자녀 지원: 별표 1에 따른다.</u> 3. <u>전입자 지원: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전입 지원은 1회에 한한다.</u> 4. <u>전입학생 지원: 별표 2에 따른다.</u> 	<p>제4조(지원내용)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출산장려 및 다자녀 -----.</u> 2. <u>전입자 및 전입학생 지원: 별표 2에 따른다.</u> 3. <u>결혼장려 · 임산부 · 어린이집 신입생 및 인구증대 유공 인센티브 지원: 별표 3에 따른다.</u> 4. <삭 제>
<p>제5조(인구증대시책 추진협의회 설치 · 운영) ① · ② (생략)</p>	<p>제5조(인구증대시책 추진협의회 설치 · 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 <u>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내 비영리단체장, 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인구증대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청년혁신과장, 농축산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u></p>	<p><삭 제></p>
<p>④ <u>협의회 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u></p>	<p><삭 제></p>
<p>⑤ <u>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일정직위를 요건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종료 시 해당 임기가 종료한다.</u></p>	<p><삭 제></p>
<p>⑥ <u>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u></p>	<p><삭 제></p>
<p>⑦ <u>군수는 협의회가 인구증대를 위하여 건의한 사항을 인구증대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삭 제></p>
<p>⑧ <u>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5조의2(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협의회는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업무·복지업무·인구증대 업무·영농정착 지원업무·임산부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군내 비영리단체장, 남해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인구증대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p>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직위를 요건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종료 시 해당 임기가 종료된다.</p> <p>⑤ 협의회는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p> <p>⑥ 군수는 협의회가 인구증대를 위하여 건의한 사항을 인구증대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⑦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증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p> <p>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p>